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6호 2018. 09. 13.(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05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
- 사천시 공고 제1054호 2018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추가)신청 공고----3
- 사천시 공고 제105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14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천시 공고 제2018 - 105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9. 1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18. 9. 13. ~ 2018. 9. 2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	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표행경시 사표		
27조2044	체어맨W 리무진	김*희, 김*규	2018. 9. 5.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83.호.9922	봉고프런티어	김*규	2018. 9. 5.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 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 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고 제2018 - 1054호

2018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추가) 신청 공고

사업명: 2018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추가)

2. 사업비 및 사업량

감척 대상업종		사업-	물량 및 예산액
검색 세경협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1순위(3개 업종)2순위(3개 업종)※ 아래 세부업종 참조	2018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추가)		- 총 사 업 비 : 금 200,865천원 - 폐업지원금 : 금 137,000천원 - 잔존가치금액 : 금 58,696천원 - 감정수수료 : 금 5,169천원

☞ 감척대상 업종

- 1순위 : 경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 보다 어선 척수 또는 허가 건수가 많은 업종

⇒ 3개 업종(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새우조망)

- 2순위 : 경남도 연안어업실태조사 결과 연안어업 감척필요 어선

 \Rightarrow 3개 업종(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선망)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4.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2018. 9. 17. ~ 9. 28. 18:00까지

- 접수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어업지도담당 박청운/ 055-831-3120)

5. 신청대상 어선 : 신청개시일(2018. 9. 17.) 기준 선령 6년 이삿인 어선

6.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2) 규모(톤수)가 큰 어선
-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 5) 「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6)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7. 신청자격

-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 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 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 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 (3)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 (4)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한다.
 -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최근 1년간 : 2017. 9. 16. ~ 2018. 9. 17.)
 -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최근 2년간 : 2016. 9. 16. ~ 2018. 9. 17.)
- ※ 해양경찰서 선박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낚시어선업은 입·출항 구분)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단, 우리 시가 추가 근거자료를 요구 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우리 시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한다.
-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 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 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바)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8. 신청 서류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2)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3) 어선사진(전 · 후 · 좌 · 우) 각 1매
- 4)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 및 위판실적(최근 1년간)
- 5) 선박입출항 내역(해양경찰서, 선박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

9. 사업 대상자의 포기 시 제재조치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선정 통보서를 우리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 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어선감척 절차

- ① 어선감척 사업 대상자 신청(신청자 ⇒ 사천시)
 -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 ②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선정
- ③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사천시장 ⇒ 신청자)
 - ⇒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선정 통지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④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사천시장)
 -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평가
- ⇒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 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 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기초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 ⑥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천시장)
 -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제출(규칙 별지 5.6호 서식)

11.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12.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경과)

(단위: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시/1점등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1) 이 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 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음.
- 2)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임.

13. 기타

- 1) 사업신청자는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등 2018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해양수산과(전화번호 831-31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동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1.

사 천 시 장

(서식 1)								
■ 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뒤			-				
		어선 감척	대상기	아 선정	신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기간(방침 통	통보): 30일	<u> </u>
	성명 또는 법인명(대	표자의 성명을 함	께 적습니다	ł)	생년월일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	호:)
0144	어선의 명칭				어선의 경	5류		
어선 내용	총톤수				진수연월	일		
희망하	하는 폐업지원금의 익	수						
	l어업의 구조개선 및 제1항에 따라 어선 2		_	•	² 법 시행	령 제3조제2	2항 및 같 ^년	은 법 시행규 월 일
			신청인				(A-	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5	<u>1</u>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네(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없음
			처리절	설차				
신청서 직		→	확 인	→ 기인 해양수산부 시・도지	• 결재 장관 사	→ 대상자	선정	통 보

210mm×297mm[백상지 80g/m²]

(ᅿ	시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エサベ	(저	화번호:)			
	(건	와인호.)			
 어선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내용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시권	2. 폐업지원금: ()원 예상				
내용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3. 그 뒤에 이급증자자에 대한 경찰한경시원급(- 개	[설문 <i>]</i> 등 시원			
 어선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	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감척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절차					
글시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	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 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 · 어구 매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성명 또는 법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	어업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허가에	종류 • 명칭			
관한	및 어구의			
	규모			
사항		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명칭			
어선의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제원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1 천 시 공 보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의결 통 보 결 정

사 천 시 궁 보

(서식 4)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폐업지원금 ㅈ		서		(OLH)	
접수번호	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 :	^{게다.} 접수일		처리기긴	(방침 통보): 30일	(앞쪽)	
	성명 또는 법인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	화번호:)	
	허가번호		허가기간				
OI OI	어업의	종류	명칭	ļ	어구의 규	<u>모</u>	
어업 참지에	종류 • 명칭						
허가에 관한	및 어구의						
권한 사항	규모						
710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	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명칭						
어선의	어선번호		진수연-	월일			
제원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여근히	└── I어업의 구조개	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3주저		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_	,,,,,,,,,,,,,,,,,,,,,,,,,,,,,,,,,,,,,,,		1011 1	
, , , , , ,					년 ^율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	<u> </u>	
사	천 시 장	귀하					
	1. 어업허가증 사	본 1부					
첨부서류		l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 ŀ 사본 1부	수산부장관이 정	성하여 고시	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210mm×297mm[백승	당지 80g/m²]	

사천시 공고 제2018 - 105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9. 13.

사 천 시 장

- 1. 목 적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옹벽의 전도·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2. 행정예고 기간 : 2018. 9. 13 ~ 10. 3(20일간)
- 3. 의견제출 기간 : 2018. 9. 13 ~ 10. 3(20일간)
- 4. 공고방법 : 사천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www.sacheon.go.kr)
-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천시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18년 10월 3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31-6036)

라. 제 출 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52539

마. 문의처 :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33-831-3316)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역명	위 치	χ	정개요	2	지저 사으	нл
시작성	기 시	유형	급	면적(m²)	지정 사유	비고
정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62-5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6/2	급경사지 옹벽 일부구간의 전도현 상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 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8. 지정 후 정비계획

지역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정의	2018년 이후	1,000	옹벽정비 및 보강 등 L=57.0m, H=3∼10.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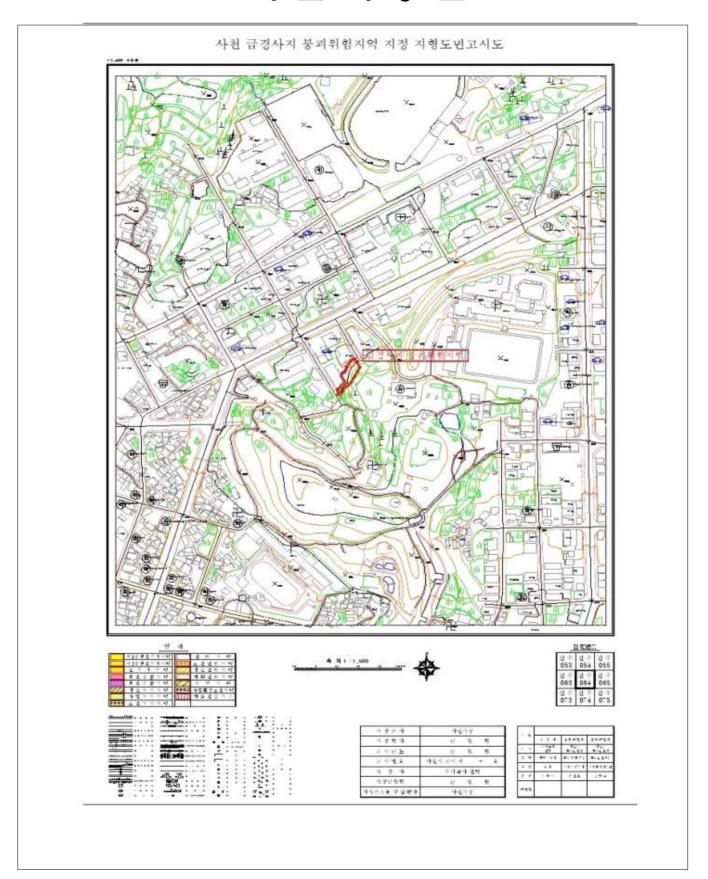
※ 사업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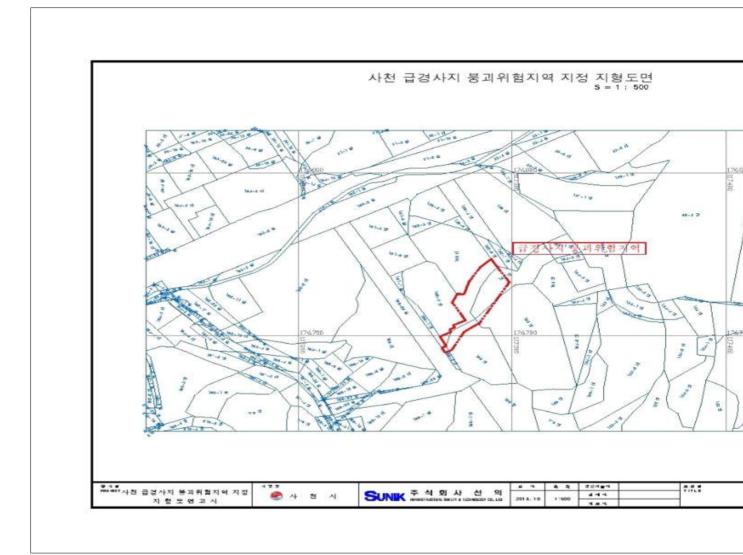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붙 임 1.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
 -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 1 천 시 공 보



^1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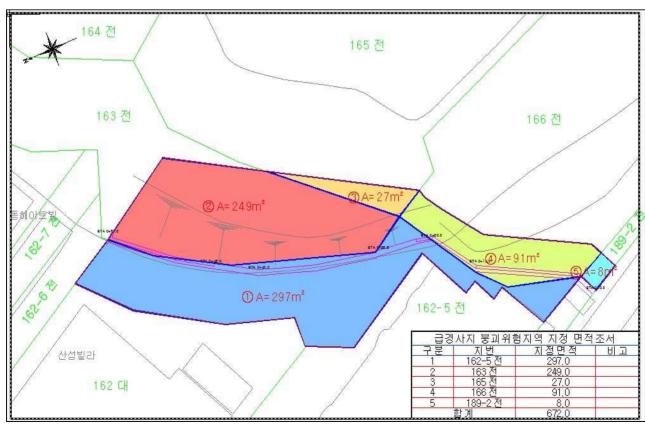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지정구역 현황





■ 행정절차법 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7.28>	ru 😓 🕡						
의 견 제 출 서 ※ 이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니다.									
<u> 1 1 1 1 1 1 1 1 1 </u>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시 붕괴위 	l험지역 지정(정의지 역	4)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al 31 - 11 -			(전화번호	- .		١			
의견제출 내용	의 견		(인화인)	۷٠)			
내 공									
	-1 -1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 인)						
사 천 시 장 귀하									
	<u> </u>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